

비행청소년 교정보호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시스템 비교 : 한국, 이태리, 벨기에 소년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이 명 숙**

초 록

본 연구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분담되어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청소년보호 모델을 우리나라의 소년보호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청소년 보호의 철학적·이론적 배경을 비행청소년 인권보호의 주요 원칙(보호권, 참여권, 생명권, 발달권)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3국(한국, 이태리, 벨기에)의 소년보호제도 및 사법처리단계별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상호비교하였다. 끝으로 비행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를 위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 또는 민간의 구분을 떠나 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함을 결론으로 제시하면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법적 개선방안을 정책제언으로 포함하였다.

주제어 : 비행청소년, 인권보호, 보호주의(보호권), 적법절차(참여권), 최소구금의 원칙(생명권), 처분의 선택기준(발달권), 지역사회 참여, 공공-민간 협력, 현지방문조사, 한국, 이태리, 벨기에

* 이 논문은 200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013-B00306).

이 논문은 2007학년도 경기대학교 연구년제 수혜로 연구되었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경기대학교 교수

I. 서 론

우리나라 비행청소년보호에 있어서 문제점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법무부의 처우가 소수청소년에 대하여만 소년원('07년 1,760명), 소년교도소('07년 371명) 등 시설처우에 한정되고 있고 다수청소년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07년 57,041명)로, 법원소년부에서 보호관찰('07년 18,073명) 등으로 구체적 지도대책 없이 사회로 방출됨으로 인해, 비행청소년들의 재범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매년 처리단계에서 사회로 방면되는 수만명('07년 7만5천 여명)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는 공공의 개입만으로는 절대적 한계가 있어서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하여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이 참여하는 비행청소년교정예의 새로운 모델이 개발·시행되어야 한다(이명숙, 2008a; 조은경 외, 2006; 권문일·정익중, 2005; 남미애, 2004; 최옥채, 2002).

국가주도적인 형사정책의 기초가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의 한 단면이라면, 앞으로는 국가와 민간이 상호협력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서 비행청소년문제를 내 이웃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돕고자 하는 시민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인식하에 우리보다 앞서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교정 모델을 실천하고 있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심층분석하여 우리사회에 적용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영역이 행사할 수 있는 사법적 제재와 민간영역이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복지적 지원이 효율적으로 역할분담되어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사법복지적(judicial welfare) 청소년보호 모델로서 이태리와 벨기에 제도를 우리나라의 소년보호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청소년교정보호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효과적인 민관협력 모델제시 및 제도개선을 통해 청소년중심 교정보호지원서비스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현장조사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청소년의 인권보호, 보호패러다임 및 보호모델, 민간참여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 이론과 개념을 소개할 것이다.

또한 현장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 이태리, 벨기에의 교정보호제도 전반을 고찰하고, 이들 3국의 공공기관들이 실행하고 있는 비행청소년교정보호 서비스에 민간이 참여·협력하고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이들 기관과의 실무자 개별 면담을 통해 수집

된 의견도 더불어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토대로 한국, 이태리, 벨기에 3국의 전반적인 비행청소년 교정보호제도의 이념과 방향을 고찰하고, 3국간 인권영역별(보호권, 참여권, 생존권, 발달권)로 청소년교정보호제도를 비교하고, 3국간 사법처리단계별(재판, 보호관찰, 선도) 공공-민간 협력사례를 정리하여 비교하며, 끝으로 이들 이론과 제도 그리고 각국 사례로부터 청소년의 교정보호를 위하여 민간의 인적, 물적 자원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법적 개선방안을 결론 및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것이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비행청소년”이라 함은 소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죄를 범하였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동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집단배회, 무단가출, 음주 및 소란행위 등을 하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지위비행 청소년(status offender)은 제외한다.

본 연구에 포함시킬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럽국가 중에서도 국내에 제도소개가 미흡한 비영어권국가(이태리, 벨기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행청소년 교정 및 보호제도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심층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체계 및 법제도를 분석하고, 비행청소년의 인권보호와 더불어 선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제도적·사회구조적 요인을 규명한다.

둘째, 청소년교정프로그램에서 가족, 또래집단, 학교의 교육자,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지도자들이 담당하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들 및 대인관계들이 어떻게 비행청소년의 사회화와 선도과정에 개입하는지에 관해 기술한다. 즉, 지역사회내 다양한 인적·물적 민간자원이 비행청소년의 처리단계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며 어떤 교정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한국과 이태리, 벨기에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 국내 자료는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수집하고, 이태리 및 벨기에

자료는 현지방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현지방문조사에서는 이태리와 벨기에의 비행청소년 교정보호와 관련된 사회구조적·제도적 상황을 검토하고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지도자들의 기능 및 이들간의 상호연관적 구조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공공영역으로는 이태리에서 소년사법센터(로마, 피렌체), 소년미결구금센터(로마, 토리노), 장기구금시설(로마, 토리노), 소년복지사무소(로마, 피렌체, 토리노), 인성교육기관(로마, 리보르노, 토리노) 등 공공영역에 속하는 12개 비행청소년 관련기관을 방문 조사하고, 벨기에에서는 플라미쉬 주정부, 프렌치 주정부, 그리고 유럽연합 본부 등 3개 기관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민간영역으로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소년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가톨릭단체인 “살레시오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보호시설 3개 시설(로마 Sacre Cuore, 로마 Borgo Ragazzi, 벨기에Boys Home)을 대상으로 한 방문조사를 통해 제도상의 보호기능 및 시스템이 실제로 비행청소년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보호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Ⅲ. 이론적 배경

1. 아동청소년 인권의 발견과 비행청소년의 인권보호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형태로 인권의 국제적 권리성이 선언된 후, 국제인권규약이 1966년 제정되었고 그 안에 아동관련규정을 포함하였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24조 제1항은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조치에 대한 권리를 아동이 가짐을 천명하고 있다. 그 조치는 가족, 사회 및 국가에 의한 조치로 되어 있으나 부모가 제1차적인 책임을 지며 사회와 국가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 간접적·제2차적인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1998:19).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자유관련 규정이 있다. ‘행형제도는 피구금자의 교정 및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소년 범죄

자는 성인과 분리되는 것으로 하며, 그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10조3항) 라고 성인과 청소년의 분리수용 및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처우를 규정하고, 소년재판절차의 연령과 갱생의 고려 등(14조4항)을 규정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1998:24).

비행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가장 근본이 되는 국제규약은 1985년에 제정된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이라 할 수 있다. 유엔최저기준규칙은 국제인권규약 특히 B규약 14조4항을 구체화시킨 것이며,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소년절차에 있어서 인권보장의 최저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각국의 소년법제 및 운용의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1989년에 제정된 「아동권리협약」 제37조 및 제40조는 유엔최저기준규칙에서 유래한 것이다(청소년보호위원회, 1998:26).

유엔최저기준규칙에서 강조하는 비행청소년 인권보호의 주요 원칙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보호주의(보호권), 적법절차(참여권), 최소구금의 원칙(생명권), 처분의 선택기준(발달권) 등이 주된 특징인 것이다. 첫째, 보호주의 측면에 관해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소년사법의 복지적 성격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년사법시스템은 청소년의 복지에 중점을 둔 것이어야 하며, 절차는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청소년의 복지는 그 청소년의 사건을 고려함에 있어서 지도적인 요소이어야 한다는 기술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적법절차 측면에 관해서 동 규칙은 범죄사실의 고지를 받을 권리, 변호인 의뢰권, 부모 및 보호자의 입회권, 법적 조언자에 의해 대리받을 권리, 무상의 법률부조를 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셋째, 최소구금의 원칙과 관련하여 사법당국이 청소년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결정할 경우에는 사회내에서 모든 가능한 교육 및 복지적 조치들을 강구한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 박탈은 폭력발생 우려, 중대 범죄의 재발 우려 및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유의 박탈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다. 넷째, 처분의 선택기준은 사회의 필요와 소년의 필요를 동시에 고려하고 처분을 고려함에 있어서 청소년최상의 이익 원칙과 복지가 지도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제12조 1항)”

고 규정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2항)”고 보장한다.

청소년의 인권은 성인의 권위와 힘이 절대적인 사회환경에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인권보장은 자신의 환경과 삶의 경험이 “취약한” 또는 “불리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중요하다. 성인에 비해 자기결정권 또는 자기보호권이 미약한 청소년들의 인권문제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배가된다(McNeish, 1999; 천정웅, 2008:39에서 재인용).

2. 비행청소년보호 패러다임의 전환

종래 형벌 패러다임에 내재된 치명적인 결함은, 범죄자에게 보다 큰 고통을 과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제거하려 한다는 점에 있다. 해악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해악(형벌)을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범죄로 인해 촉발된 사회적 손실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이민수·이장규, 2009:577).

지난 30여년전부터 시작된 소년사법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사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회복적 사법이 국제적 호응을 얻는 이유는 복지모델과 정의 모델의 각기 다른 철학을 잘 융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주의자들은 범죄자의 사회재통합과 공식절차로부터의 다이버전에 강조를 두는 ‘회복적’ 측면에 끌리고, 신-교정주의자들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피해자와 사회에 빚진 것을 갚아야 한다는 ‘사법적’ 측면에 끌린다는 것이다(Hazel, 2008:53).

회복적 사법의 목표는 사법의 목표를 응보 내지 ‘정당한 대가’를 위한 형벌의 부과가 아니라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회복에 두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단순히 법규범의 위반이 아니라 피해자와 사회 그리고 범죄자 자신에게도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인 것이다(이민수·이장규, 2009:577).

유럽에서도 비행소년에 대한 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거치고 있다. 벨기에를 예로 들면 1965년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임상모델이 지배적이었다. 즉 어린 범죄자들은 열악한 생활조건과 부적절한 심리발달로 인한 피해자로 간주되었다. 특히 정

신의학과 임상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비행소년들에 대한 임상적-치료적 처우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1965년 청소년보호법의 재활주의 철학과 그 시행에 대한 사회의 불만족이 증대된 결과로 지난 20여년간 청소년비행에 대한 처벌적 조치들이 부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지역사회 봉사가 점차 증가하여 재활주의 패러다임 내에서 비행청소년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Van Dijk et al., 2006:195).

1990년대부터 시작되고 있는 벨기에 소년보호제도의 개혁은 첫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수준에서의 총체적 조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즉 개인적 비행사례에 대한 조기탐지와 임상적 치료에만 강조를 두지 않고 사회내 통합(재활)을 촉진하고 사회적 박탈의 기제를 바꾸어 주는 광범위한 사회정책을 지역사회 단위로 시행하는 1차적 예방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이다. 둘째, 비행소년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전의 보호위주의 조치 대신에 보다 명백하게 청소년들에게 관용의 한계를 알게 하고 사법적 안전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조치로 대체해 가고 있다. 개인별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임상적 처우는 명백하게 심리적 문제가 있는 일부 청소년에게만 실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적 처벌(회복적 사법)” 모델이 제안되어 순수한 보호모델 대신에 교육적 조치와 처벌을 융합한 처우모델을 채택한다. 교육적 처벌의 예로는 피해자-가해자 화해, 사회봉사 등을 들 수 있다(MCF, 1999a; MFC, 2006).

한국에서도 최근에 소년보호제도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종전까지는 법무부장관의 책임이 이미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사법적 집행에 한정된 데 비해, 2007년 개정소년법에서는 추가적으로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법무부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종전의 보호국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명칭 및 직무를 조정하였다. 즉, 법무부장관은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비행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그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이민수·이장규, 2009:563).

3. 세계각국의 비행청소년 보호모델

국내에서 소년사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소년법의 규정에 대한 논의나 형사정책적 차원의 정책제안에 그친 측면이 많다. 그러나 국제인권규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오늘날,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소년사법체계를 국제적 기준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다.

전 세계의 소년사법체계를 가장 분명하게 구분짓는 두 가지 유형은 복지모델(welfare model)과 사법모델(justice model)이다. 그러나 어느 한 나라도 정확하게 둘 중 어느 한 유형에만 부합되는 체계를 갖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양극단에 두 유형의 모델을 상정하고 연속선상에서 각 나라의 제도와 정책이 시대에 따라 어느 쪽으로 변화해 가는가를 탐색하는 틀로서는 유용한 구분이 될 수 있다(Hazel, 2008).

복지모델은 가부장적인 보호주의 정책과 연관된다. 소년사법의 주요 목적이 처벌 보다는 치료에 있다. 청소년은 미숙하다는 관점에 기초하므로 청소년을 이성적이고 자기 결정 능력이 있는 주체로 보지 않고, 대신에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종속되고 그들의 행위를 환경의 결과로 본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범죄행위는 환경상의 역기능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법체계의 과제는 비행의 밑바닥에 내재해 있는 사회적 원인을 찾고 이를 치료하는 것이며, 비행행위 자체를 처벌하는데 있지 않다(Alder & Wundersitz, 1994; Hazel, 2008에서 재인용). 이 개념은 초기 소년사법의 절차 및 처분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지배적인 것으로서 이에 기초한 개념이 국친사상(parens patriae)으로서 아동보호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여 19세기 말부터 서구 여러나라에서 독립적인 소년법원을 설치하는 근거가 되었다(Hazel, 2008:23-24).

사법모델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만큼 충분히 이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도 비행의 심각성에 부응하여 법률상으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사법모델은 비행자의 요구(needs) 보다는 행위(deeds)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와 책임 사이의 상반되는 개념이 사법모델의 기초를 이룬다. 청소년의 권리는 완전한 적법 절차를 통해 보장되어야 하며, 청소년도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갖는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개인은 적법절차에 따라 모든 권리를 보장 받고 국가의 권한은 제한되고 예측가능하고 결정적인 것이어야 한다(Alder & Wundersitz, 1994; Hazel, 2008에서 재인용).

복지모델과 사법모델의 이분법에서 발전된 제3의 유형은 범죄에 대한 사회의 책임성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이는 최소개입 모델과 밀접하다. 범죄행위는 불가피한 사회구조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최소의 공적 개입과 지역사회 개입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Hazel, 2008:25).

4. 교정보호영역에의 민간참여 의미

국가주도의 형사사법만으로는 범죄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비행청소년의 문제유발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므로, 이들에 대한 선도가 어느 한 기관에 의해 독자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관간의 연계 및 민간의 참여를 요하는 실천적 이슈가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90년대부터 효과적인 형사사법의 운영을 위하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려는 방안들도 모색되고 있다(오영근·최석윤, 1994). 1996년도 OECD 보고서에서도 청소년 문제의 대안으로 지역사회내 네트워킹과 통합을 강조한 바 있다(남미애, 2004:156).

비행청소년을 위한 민간 협력이란 사법처리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기관간 정보제공, 청소년의뢰, 조직간 협의,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공동사업의 실시 등을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남미애, 2004:156).

비행청소년을 사법처리하는 공공기관으로는 경찰, 검찰, 법원이 대표적이고 법원의 처분결과를 구체적인 처우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법무부산하 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이 있다. 민간 영역의 참여형태는 각 처리단계마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인적·물적 자원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다만 소년보호처분 중 일부(제6호 및 제7호)에 한해서는 아동복지시설, 병원, 요양소 등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다.

남미애(2004)는 비행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연계 협력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비행청소년과 그 가족은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갖고 있으므로 심리상담을 비롯하여 경제적 원조, 취업알선, 학습지원, 보호 등 다차원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으로 이어지는 사법처

리 단계별 기관간 연계는 서비스 제공의 파편성과 비연속성을 줄여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및 개입이 가능해 진다. 셋째 전문조직간 협업은 다른 전문 직종 및 기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구성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된다.

뿐만 아니라, 비행청소년 대부분은 그들의 규범, 가치관, 생활스타일 등으로 인하여 일반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대부분 하층 가정에서 성장함으로 인해 중간계층인 사법기관 공무원 또는 일반 시민들과 두드러진 사회적 거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거리감은 청소년이 공무원들과 공감대를 갖기 힘들게 하며, 또한 공무원이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지역사회 민간인력의 활용은 단순히 인력의 부족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책이라는 가정에서 조직화되고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시민의 참여는 사회와 제도 그리고 곤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이들의 사회통합을 돕는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남미애, 2004; 김일수, 2009; 이동원, 1994; 오영근·최석윤, 1994).

IV. 연구 결과

1. 비행청소년 보호제도 고찰 : 한국, 이태리, 벨기에

1) 한국 제도의 고찰

(1) 2007년 소년법의 개정방향

한국에서 비행청소년의 교정보호의 기본이 되는 법률은 소년법으로 2007년에 전면 개정되어 2008.6.22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방향은 청소년과 사회의 필요에 따른 적정처우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 특히 참여권과 발달권의 영역을 확장하고 더욱 구체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법의 개정방향은 첫째 처벌 위주의 소년사법체계를 교화, 선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둘째 청소년비행의 연령이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 사법적 보

호의 대상연령을 10세까지 하향조정하고, 셋째 사법처리되는 단계에서 청소년의 인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것이다. 법원소년부에서 처리하는 비행 청소년 사건에 대하여 국선보조인 제도의 부분 도입, 검찰단계에서 기소결정전 조사 제도 및 조건부기소유예의 법제화, 그리고 화해권고제도 도입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은 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년의 선도 및 교육과 관련된 기관들과의 다각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이명숙, 2008a; 2008b).

(2) 보호대상 청소년의 저연령화

중전 법률에서는 사법적 보호의 대상연령이 12세이상 20세미만이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10세이상 19세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보호관찰, 소년원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가 초등학생으로까지 내려갔음을 의미한다. 처분유형에 따라 대상청소년의 하향연령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소년법에서 교정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한 비행청소년의 유형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이나, 소년사법기관에서 실제 처리하고 있는 청소년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에 한정되고 우범소년은 사법적 보호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으로 10세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을 말하고,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하며, 우범소년은 10세이상 19세미만 소년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 예시하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등 지위비행행위를 의미한다(소년법 제4조).

(3) 보호처분의 다양화

한국은 개정소년법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중전의 보호처분 종류(7종)를 확대·다양화하여 총 10종의 보호처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제1호~제10호 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제32조)고 명시하고 있다. 제1호~제5호 처분은 사회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을 선도하는 방식이고, 반면에 제6호~제10호 처분은 민간 보호시설 또는 정부보호시설(소년원)에 수용하여 보호와 교육을 병행하는 시설처우를 말한다.

그러나 법규상 제도 도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소년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조건부기소유예를 범제화하였고, 종전에는 보호관찰의 부가처분으로서 시행하던 수강명령(제2호) 및 사회봉사(제3호) 제도를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분리하는 등 사회내 처우 영역은 확대되었으나, 이를 실행할 보호관찰소의 직원 및 민간 범죄 예방위원 등 인력증원이나 전문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예산증액은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새로운 제도의 효과를 쉽사리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원혜옥, 2009; 권문일·정익중, 2005).

2) 이태리 제도의 고찰

(1) 1988년 소년법의 개혁방향

이태리는 서구 여러나라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뒤늦게 소년사법¹⁾에서 복지적 접근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국가이다. 1934년부터 소년법원이 성인법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체계로 작동하였고, 1956년이 되어서야 일련의 복지적 개혁이 도입되었으며, 1988년에는 새로운 소년사법체계 형성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²⁾이 있었다(Ingrasci, 2005).

개혁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청소년의 교정시설구금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법절차로 인해 청소년의 성장과 정상적 교육 과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체로 청소년범죄자는 비공식적으로 처리되고 재판에까지 회부되지 않으며 구금율은 영미국가에 비해 극도로 낮다(Nelken, 2006:169; CGM, 1999). 둘째 청소년범죄자의 재활은 개별화된 사회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도모

1) 이태리에서 형사 및 민사 책임연령은 18세이다. 범죄를 저지른 14세이상 18세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긴 하나 성인형량의 2/3로 경감된다. 14세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형법 97조, 98조). 이태리 소년법원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모두 다룬다.

2) 1988년 개정법률(D.P.R.448)

하고 이를 위해 법무부와 소년법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행정관서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휘하에 예속시킨 것이다. 셋째 법적 처리과정 동안에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한편 그들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다이버전 조치를 증진하고 재판전 단계에서 '예비'조치들을 다양화하는 것이다(Cavadino & Dignan, 2006:260; Ingrasci, 2005).

1988년 개정법률은 처분 자체보다는 절차를 개혁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서 도입한 새로운 조치는 모두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소년사건에 대하여는 시험보호관찰을 통하여 사회내 처우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교정시설 수감을 억제하는 기소전 대체 처분인 것이다. 법원에서 내린 처분의 실행은 법무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가 주도하여 집행하고 지방행정부의 사회복지사가 이에 협력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시험보호관찰을 받은 청소년 중 70%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는다. '성공적 사례'로 보는 것은 시험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 판사가 더 이상의 사법절차(재판)를 진행할 필요 없을 정도로 청소년이 선도되었다고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보호관찰 받았던 청소년의 재범율은 보호관찰 기간종료후 2년 이내 기간에 40%가 재범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다(Nelken, 2006: Ingrasci, 2005).

(2) 관용이 허용되는 사회문화적 여건

이태리 소년사법체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관용"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태리는 영미권 및 유럽 여러나라와 비교해 볼 때 "비처벌 관용" 모델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Nelken, 2006:169).

다른 영미권 국가들에 비해 이태리의 사법체계가 관용성을 갖도록 허용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펴보면 몇 가지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범죄 문제 또는 위협이 이태리에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중의 관심이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들-부패, 정치적 테러, 조직범죄 등-에 쏠려 있어서 청소년들이 범하는 절도, 강도, 성폭력 등은 "마이크로 범죄(micro-crime)"로 보고 이를 큰 사회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태리에서는 '청소년비행'이라는 용어 자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강한 가족적 유대감에 기인한다. 이태리에서 가족에 대한 문화적 중요성이 여타 영미국가에 비해 두드러지기 때문에 결혼가정 비율이

낮고 이태리 사람들은 가정이 청소년의 훈련과 사회화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는 이태리 사회와 국민정서 속에 뿌리 내린 전통적인 카톨릭 정신이다. 죄인에 대한 용서를 강조하는 카톨릭의 전통이 이태리 문화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청소년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관용으로 선도하고자 한다. 청소년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위하여 지역의 많은 성직자들이 청소년선도에 전념하고 있다. 살레시오회가 대표적인 청소년선도단체이다. Young, J.(1989)의 표현을 빌리면, “이태리는 차이(difference)보다는 이탈(deviance)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Nelken, 2006:169에서 재인용).

3) 벨기에 제도의 고찰

(1) 1965년 청소년보호법의 기본방향

벨기에는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교육적 처분을 한다. 소년법원의 관사는 18세미만의 소년들이 행하는 모든 비행, 품행문제, 학교이탈 문제 등을 다룬다. 소년판사는 소년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년이 살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검토한다. 소년법원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면, 대부분의 보호조치들은 민간기관에 의해 시행된다. 민간기관의 대다수는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이다. 시설처우로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데, 공공시설은 민간시설보다 더 폐쇄적이고 훈육적 성격이 강하다(MCF, 1999b).

비행소년에 대한 처리는 아직까지도 1965년 청소년보호법³⁾에 기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주정부는 조치의 실행과 관련된 하위법령들을 각각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1994년, 2002년 두 번에 걸쳐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1965년 법률이 기본법으로서 현재까지 소년사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Van Dijk et al., 2006:187).

1912년에 아동법(Children's Act)을 제정한 때부터 아동은 처벌하기 보다는 보호해야 하고 (재)교육해야 한다는 개념을 유지시키고 있다. 개입시에 중심적인 준거는 “아동최상의 이익” 원칙에 두고, 아동의 사회재통합과 재활을 강조한다. 즉 벨기에는 전통적으로 보호모델을 따르고 있다.

3) 18세미만 소년은 형사책임이 없지만, 16세~18세미만 소년이 특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는 하한 연령은 없다.

벨기에 보호모델의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사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로 본다. 그들의 행위는 범죄로 간주하기 보다는 처해 있는 문제상황으로 인한 피치못할 결과로 보고 따라서 개입도 특정 비행행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행동들(학교이탈, 가출 등)과 상황들(가정결손, 아동학대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청소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은 그가 행한 행위 대신에 그가 처한 환경과 성격에 기반하여 시행해야 한다. 판사는 어느 때이든 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 걸쳐 특정 아동에 대해 지정된 판사가 일관성있게 사건을 전담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활모델은 청소년에게 적법한 법률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는 맹렬한 비난을 초래하게 되었다(Van Dijk et al., 2006:196; MCF, 1999a; 1999b).

(2) 지방정부에 청소년보호책임의 위임

벨기에에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은 연방정부의 기능이고, 반면에 소년법원에서 내린 교육조치의 실행은 주정부의 몫이다. 다양한 개혁정책들로 인해 벨기에 정부는 광범위한 교육, 문화 정책들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당연히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지방정부에 위임되었다. 따라서 1990년 플래미쉬지방법령 및 1991년 프랜치지방법령은 청소년과 가족의 공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지원들을 통하여 청소년을 사법적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취지를 갖는다. 이에 부응하여 프랜치지방정부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존중, 예방의 중요성, 가족과의 연합이라는 해결책에 우선권을 두고, 공적 개입을 대체하는 다양한 사회적, 교육적 지원의 실행을 제도화하게 되었다(MCF, 1999a; MFC, 2006).

2. 3국의 인권영역별 보호제도 비교

1) 보호권

아동최상의 이익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명시됨으로써, 아동과 관련된 어떠한 절차에 있어서든지 주요한 원칙이어야 한다. 비행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전 과

정에 걸쳐 이동과 청소년이 특별한 배려를 받아야 할 이유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요하고, 성인과는 상이한 접근이 청소년에게서 더 나은 결과를 생성하며, 특별한 수사방법이 이후에 더 적절한 의사결정과 처분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Hazel, 2008:44).

(1) 수사단계에서 청소년전문성

유엔최저기준규칙은 ‘경찰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독점적으로 소년을 취급하는 경찰관 그리고 주로 소년범죄의 방지에 종사하는 경찰관은 특별히 지도되고 훈련받아야 한다’(12-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조직도 소년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기관의 하나이므로 그에 상응한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경찰관은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청소년이 놓여져 있는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청소년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소년경찰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경찰은 청소년이 소년사법제도와 접촉하는 최초의 단계이므로, 경찰관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적절한 태도로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 규칙은 ‘소년사건을 취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습득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전문교육, 현직교육, 보충학습, 기타 적절한 교육방법이 이용되어야 한다’(22-1항)고 규정하여, 전문교육의 필요성과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1998:318; 원혜옥, 2009).

UN(1998)에 따르면, 전세계 절반이상의 나라에서 청소년을 처리하는 경찰은 특별한 교육훈련을 받는다. 프랑스, 덴마크 등 일부 나라에서는 소년경찰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Hazel, 2008:44).

벨기에는 1998년 경찰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전문 주담당관”이 지역 경찰관서에 배치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격은 범죄학 전공 학위를 요한다. 주담당관은 검찰청의 청소년 및 가사 부서에 주로 배치되고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조사를 수행한다. 소년법원은 법원의 결정 집행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담당관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규모가 큰 경찰관서에는 종종 전문 청소년부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형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까지 배치되어 있다. 청소년조사를 위한 특수 설비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독립된 청소년조사실이 있거나 경찰표식이 없는 차량을 사용하기도 한다(Van Dijk et al., 2006:194).

한국에서는 경찰의 청소년전문화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 보호관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관이 조사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검사결정전 조사제도가 시작되었다. 비행성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생애지속 범죄소년에 대한 검찰 단계에서의 무방비적인 불기소 또는 기소유에는 특별한 조치없이 이들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불기소 대상자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조사와 선도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이민수·이장규, 2009:567).

소년사법기관의 개선방향을 지적하는 연구로서, 남미애(2004)는 경찰,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청소년관련 보수교육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3을 차지하는 등 사법기관 공무원의 청소년전문성이 저조한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동 조사에서 사법기관을 거친 청소년들은 경·검찰 단계에서 행해진 폭언, 폭행 등 비인간적 대우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점이라고 호소하였다.

(2) 법원 단계에서 청소년전문성

유엔최저기준규칙은 '심판권자는 사건에 있어서 올바른 심판을 내리기 위해 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 범죄를 어떠한 상황 하에서 범하였는가를 적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16항)고 규정하고, 또 '사회조사보고는 소년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를 수반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 규칙은 '채택된 처우는 항상 범죄가 범해진 사정 및 그 중대성과 함께 사회의 필요 및 소년의 형편과 필요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17-1a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소년의 처우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사실과 함께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정환경, 성장과정, 성격, 자질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청소년의 복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불가결하며, 비행재발의 방지로 이어진다는 관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청소년보호위원회, 1998).

한국의 경우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 대하여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 기타 필요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소년부는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소년법 제11조2항). 조사방침과 관련하여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2조)고 법률상에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에 섰던 많은 청소년들은 판사가 자신의 생각을 잘 듣지 않는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보고하였고, 자신을 대리하여 변호해 주고 지원해 주는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수가 넘게 나오는 등(남미애, 2004), 아직 한국에서는 청소년중심의 법정 조사 및 변호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리에서는 소년사법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들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소년전문경찰, 소년전담검사, 특히 소년법원의 전문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다. 소년법원의 판사는 법률을 전공한 전문판사와 청소년분야 전공자인 명예판사로 구성된다. 명예판사는 비상임으로서 심리학, 정신의학, 교육학, 범죄인류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 전공자로서 30세이상 남녀로 선발한다. 법원내에는 청소년의 사회화 문제를 조사하여 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다(Cavadino & Dignan, 2006:261; DGM, 2006b).

(3) 교정처우단계에서 청소년전문성

이태리의 청소년교정시설은 내부적으로 보안 파트와 교육 파트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다. 보안 파트는 교정경찰이 전담하고, 교육 및 생활지도 등 프로그램진행은 교육요원(지도사, 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이 담당한다. 교육요원 중에서는 지도사 직렬이 중심을 이루고 소장도 지도사 직렬에서 임명한다. 이외에도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통역 및 문화교육을 위하여 비정규직으로 문화중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DGM, 2006a; 2006b).

청소년미결구금센터에서 교육요원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소년판사 사이를 중재하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서 소년법원에서 청소년에 대한 결정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도록 청소년의 성격, 환경 등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48시간 이내에 파악하여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요원들은 청소년이 구치소에 입소하는 시점에 가족과 접촉하여 청소년의 현 상태를 알려주고 향후 진행될 절차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불안감을 줄여준다. 구금센터의 보안파트에는 소년교정경찰이 배치되는데, 이들은 소년전담 검사에게 소속되어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교육훈련을 받은 후에 청소년시설에 배치되어야 한다(DGM, 2006a; 2006b).

(4) 다이버전의 다양화

최소개입의 원칙은 복지주의에서 후퇴하고 대신에 적법절차를 강조함으로 인해 나온 결과이다. 소년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도의 기간동안 필요한 만큼만 한다는 원리가 많은 나라들에서 채택되고 다이버전이 진행되고 있다(Hazel, 2008:28).

비행청소년이 처음 접촉하는 기관은 언제나 경찰이므로, 많은 나라에서 경찰의 공식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를 일종의 다이버전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Hallett & Hazel(1998)은 대부분의 경찰 주의 조치는 공식기록에 남지 않고 기타 다른 민간기관의 개입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다이버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 단계의 다이버전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벨기에, 독일, 호주 등이다. 이는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Hazel, 2008:48).

한국에서는 2007년 개정소년법에 검사에 의한 조건부기소유에 제도를 포함함으로써 검찰단계 다이버전의 법제화가 이룩되었다. 그 이전에는 법률적 근거없이 법무부 내 부규정 수준에서 시행해 오던 조건부기소유에 제도를 법률에 포함하고 선도의 방법까지 명시하고 있다. 검사는 비행소년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에 맡기거나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게 하고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그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법률상에 규정하고 있다(소년법 제49조의 3).

이태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공식 재판으로부터 청소년을 분리하는 다이버전 개념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리는 최종 판결단계 전에 법원 내에서 다단계 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실체는 다양한 형태의 다이버전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공식적인 다이버전 거부원칙이 반드시 청소년의 기소나 구금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이명숙, 2008a; DGM, 2006c).

이태리에서 소년법원 판사는 정식재판에 이르기 전에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능한한 청소년이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다양한 명령을 발한다. 주요하게 사용되는 조치로는 “무혐의”를 선고하거나 “사법적 사면”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일종의 재판 전 보호관찰인 “messa alla prova”(영어로 putting to the test, 시험보호관찰)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들은 모두 재판 전 조치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판사의 선도명

령을 잘 따르기만 하면 청소년이 기소되지 않도록 한다. 이 제도의 철학적 배경은 법원이 형사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청소년의 성숙에 더 이롭다는 사상이고 청소년 인권보호의 기본 원칙인 아동최상의 이익 원칙과 최소개입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DGM, 2006a; 2006b; 2006c).

벨기에에서 청소년사건을 법정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다이버전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검찰이다. 검사는 비행사건이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가족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고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소년법원에서는 소년사건에 대해 법원의 초기단계에서 전담 판사가 지정되어 최종 법원결정이 나가기까지 일관성 있게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아동최상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한다. 경찰은 사건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종종 “주의”를 발하면서 비공식적 다이버전을 시행한다. 학교이탈과 같은 일탈행위가 “교육적 문제상황”으로 판단되면 그 청소년(및 부모)은 사회복지지원기관에 의뢰한다(Hazel, 2008; Van Dijk et al., 2006; Cartuyvels, 2002). 이것은 한국의 상황과 유사하다.

2) 참여권

국친사상은 소년사법에서 전통적인 복지주의의 핵심 철학으로, 본질적으로 법원이 아동의 미래를 결정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보호주의 개념이다. 이면에는 아동 자신의 생각에 관한 고려는 배제되어 있다. 특히 미국에서 20세기 전반까지는 이 원리가 지배적이었으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인식의 증진과 함께 “적법절차”가 부각됨으로써 점차 국친사상이 퇴조하게 되었다(Hazel, 2008:27). 소년사법에서 적법절차의 보장은, 비행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재판 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곧 참여권의 신장을 의미한다(강현아, 2006).

(1) 적법절차의 보장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완전한 사법절차상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적법절차” 논쟁은 196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 이전에는 국친사상에 기초하여 소년법원이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법적 절차에 대한 별다른 고려없이 법원이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 결정할 모든 권한을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Hazel, 2008:46).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유럽의 인권관련 규약 등의 “정의 운동(justice movement)” 덕분에 세계 각국에서 소년사법에서의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 종전보다 청소년의 법적 권리보장이 더 강화되어, 판사는 정당한 재판을 거친 후에만 대체처벌 또는 다이버전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 확산되고 있다(Van Dijk et al., 2006:211).

이태리는 엄격한 적법성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수준의 재판전 다이버전은 거의 없다. 14~17세 청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이 가능하긴 하나 반드시 공식적으로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4세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범죄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고 그 이상의 연령일지라도 법원은 어떠한 처벌을 부과하는 경우 그 전에 피의자가 행위를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할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책임을 질 만한가를 판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Cavadino & Dignan, 2006:261).

벨기에에는 전문 소년판사가 비공식적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 단계에서는 아무런 법적 보조를 받을 권리가 청소년에게 보장되지 않았다. 법적 권리 보장의 결여로 인한 결과로서 소년판사는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구사하는데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기본 형사원칙인 적법절차(법앞의 평등, 법률보조, 범죄와 처벌간 비례성 등)의 부재가 1965년 청소년보호법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Van Dijk et al., 2006:210; MCF, 2004).

그 결과로 1994년에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적법절차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었고, 1997년 벨기에 항소법원에서는 교육처분 또는 복지처분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재판을 통해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전이라 하더라도 교육 또는 복지적 조치가 청소년의 성격과 가정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아동의 이익을 위한 보호 조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복지적 조치를 재판전 예비 단계에서 부과할 수 있으나 강제성은 가질 수 없고 청소년과 부모가 동의하는 자발적 지원 조치로 본다(Van Dijk et al., 2006:211-2).

(2) 변호사 보조인 의뢰권 및 보호자 입회권

변호인은 법률적으로 소년을 원조하는 자이지만 부모나 보호자는 청소년을 심리적·정서적으로 원조하는 자이며 청소년 성장에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로서 청소년사법절차에의 참여가 요구된다. 아동권리협약 40조2항에서는 ‘형사피의자인 모든 아동은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직접 또는 부모(후견인)를 통해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보장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최저기준규칙에서도 ‘변호인 의뢰권은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보장된다’(7-1항)고 규정하면서, ‘절차를 통해 소년은 법률 조연자에 의해 대리받을 권리, 혹은 그러한 규정이 있는 국가에서는 무상의 법률부조를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한다’(15-1항)고 규정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1998).

한국에서는 2007년 개정소년법에서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국선보조인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으나, 전반적인 도입이 아니고 부분적인 도입에 그치고 있다. 동법 제17조의2에 의하면 청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즉 신병구속된 경우에 한해 법원은 국선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하고(제1항),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하여 보조인을 스스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2항). 그러나 이 규정의 실질적 적용에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 지침이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 및 심각성을 누가 판정하며, 또한 빈곤의 적용기준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향후 소년법개정을 통해 구체적 적용지침과 예산책정 의무 등이 명시되어야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적법절차를 보장해 주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유엔최저기준규칙에서는 보호자의 입회권을 명시하고 있다. 즉 ‘부모 및 보호자의 참여권은 소년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심리적 감정적 원조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기능은 절차 전체에 미친다’(15-2의 주석)고 하였다.

한국 소년법에서는 소년심판의 절차에 있어서 보호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즉, 심리개시가 결정되면 통지를 받으며, 심리기일에 소환되고, 심리기일의 변경시에 통지를 받는다. 특히 보호자는 심리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불처분결정 및 보호처분의 결정

시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3) 생존권

(1) 최후수단으로서 구금 원칙

소년원, 소년교도소, 치료센터, 리셉션센터 등 나라마다 명칭은 다양하나 실제로 청소년의 의지에 반하여 수용하고 있는 유형의 시설들은 모두 구금시설로 볼 수 있다(Hazel, 2008:59).

유엔최저기준규칙은 특히 심판을 위한 신병구속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청소년은 성인피구금자의 악영향을 받기 쉬운 시설에 수용되어서는 아니되고, 또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특별한 요청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서도 최후수단으로서 구금 원칙은, 청소년이 지역사회내에 있을 때 위험하고 다른 방식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최단기간 동안만 구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청소년보호위원회, 1998:299).

한국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소년법 제55조 1항)고 하여 소년에 대한 구속을 억제시키고는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의 내용이 극히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구속의 대체조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검찰이 중죄라고 판단하여 공판을 청구한 사건 중 실행선고를 받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소년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공판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소년범죄에 대한 구공판 중에 상당한 비율이 구속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사단계에서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구속의 신중성이 특히 요청된다(청소년보호위원회, 1998).

이태리, 벨기에,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지난 10년간 청소년구금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체구금의 한 유형으로, 이태리에서는 야간에만 구금하고 주간에는 외부에 나가서 교육이나 근로를 담당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스페인에서는 주간 센터에서 엄격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야간에는 자가에서 거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주말에만 구금하는 형태도 있다(Hazel, 2008:61).

이태리 소년교도소는 예비구금(custodia cautelare)을 받은 소년과 징역형을 받은 청소년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소년교도소는 현재 전국에 18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1993년

부터 수용인원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기관당 평균 수용인원은 2003년 27.9명으로 소규모 시설이다. 이태리에서 소년원은 1978년에 폐쇄되었다(UNICEF Italia, 2005).

이태리 소년사법 체계가 관용적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타 국가에 비해 교정시설에까지 보내지는 청소년 비율이 낮다는 것 때문이다. 이는 1988년 개정법률의 도입에 따른 큰 변화이다. 영국에서는 연간 10,000명이상의 청소년이 교정시설에 수감되는데 비해 이태리에서는 단지 연간 2,000명 정도만이 수감될 뿐이다. 특정시점에 수용되는 숫자는 500명을 넘지 않는다(Nelken, 2006).

벨기에에서는 시설에 수용된 다수의 청소년들이 어떤 정당한 재판을 받지 않고 수용되며, 종종 재판개시 전에 풀려난다. 2002년 개정법률에 의해 청소년은 더 이상 예비단계에서 성인교정시설에 수용될 수 없게 되어, 대안으로 연방 미결구금시설("Everberg")에 수용되고 있다. 연방 구금시설은 일차적 목적이 위험한 청소년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데 있고, 지방정부가 설치한 공공보호시설들은 청소년을 사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Commission d'Evaluation, 2004).

연방구금시설은 최초 5일간 수용할 수 있고 월단위로 수용연장 여부를 소년판사가 결정하고 총 수용기간이 2개월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이후에는 지방정부 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지방정부 시설은 수용기간의 제한이 없고 20세까지 수용가능하나, 최초 3개월 수용이후부터는 3개월 기간연장, 그 다음부터는 1개월단위로 기간연장 결정을 받아야 한다(MCF, 2002).

처분으로서 소년법원 판사가 시설수용을 하고자 할 경우는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공공보호시설에만 수용이 가능하다.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판사가 매년 처분내용을 재심사하여야 하고, 구금중에 있는 청소년의 법적 권리 보장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야 한다. 청소년은 언제든지 판사에게 청원서신을 보낼 수 있다. 플래미쉬 및 프랜치 지방정부는 각기 청소년을 대변하는 공식 "아동보호감독관(옵부즈만)"을 두고 있다. 이들은 시설방문을 할 권한이 있고 판사에게 청소년의 상태를 보고한다(Van Dijk et al., 2006:215; Cartuyvels, 2002; MCF, 2000; MFC, 2006).

4) 발달권

소년사법의 기본원칙으로 인정되는 “비행청소년은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로 보는 관점과 교정보호의 목표를 “사회통합”으로 보는 관점은 공히 아동의 최적발달을 보장하는 발달권의 신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복지주의적 접근을 하는 나라들의 특징은, 청소년이 학대·방임을 받았든 비행을 저질렀든 이들을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로 본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전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로부터 도래된 것이다. 사회통합의 원칙은 회복적 사상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청소년을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로 되돌려 보내고 긍정적 인간관계를 잘 유지시키는 것을 강조한다(Hazel, 2008:27-28).

한국에서 사회내 처우로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진로 및 취업, 교육 등 서비스의 다양화, 적절한 상담,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소년원 안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퇴소후 사회적응을 위한 애프터 케어, 전문상담과 교육 등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다(남미애, 2004).

한국정부는 2007년 개정소년법에서 종전에 7가지였던 보호처분의 종류를 10가지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시행이나 권리 구현을 실제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치, 전문인력 배치, 재정 확보 등을 위한 정책 수단과 국가의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태리 소년사법절차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서, 예비조사, 예비심리, 재판이라는 3단계를 거치고 이 과정 중에 청소년과 그 부모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다(Cavadino & Dignan, 2006:261).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처분으로 “사법적 사면”⁴⁾을 들 수 있다. 청소년에게 범죄에 대한 처벌을 부과하기 보다는 발달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더 이롭다는 판단이 될 때 이 결정이 내려진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수년간은 14~17세 청소년의 80%에게 사법적 사면이 내려졌다. 사법적 사면의 대안으로는 판사가 사건을 기각시키거나, 절차를 중지시키고 사회복지사의 감독하에 “시험보호관찰”⁵⁾을 부과하는 것이다(Di Nuovo & Grasso, 1999).

시험보호관찰은 판사가 소년범죄자로 하여금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화해를 하

4) *Perdono giudiziale*

5) *Suspensione del processo con messa alla prova*

도록 하는 규정으로, 구금을 대신하는 사회내 처우의 일종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소년범죄자의 형사절차는 보류되고 시험관찰을 실시하게 된다. 시험관찰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판사는 범죄의 소멸을 선고하게 된다. 시험관찰의 세부적인 절차는 소년법원 판사가 결정하며, 이때 판사는 소년복지사무소 등 법무성 소년국 산하 기관과 연계한다. 소년범죄자는 그 특성상 불안정하고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관찰의 기간과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소년의 변화 정도에 따라 수정가능하다. 즉, 범죄의 정도에 따라 세부절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회복가능성과 성행에 따라 결정되고 수정되며 종료되는 것이다. 시험보호관찰기간이 종료된 후에 청소년의 성공적 변화에 대한 리포트가 판사에게 제출되면 판사는 사건을 기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재판전 다이버전 과정과 기능적으로 동등한 조치로 해석된다(Cavadino & Dignan, 2006; Di Nuovo & Grasso, 1999).

이외에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 법원처분으로 안전조치제도가 있다. “안전조치”⁶⁾는 감시감독과 사법재교육명령이 있다. 감시감독에는 준수명령과 가정거주명령이 포함된다. 사법 재교육명령은, 종전의 소년원처분과 유사한 처분으로서 심각한 성격적 손상이나 정신병리 증세가 있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범죄소년에 대하여 실행 대신에 전문적 재교육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해 가정공동체-커뮤니타에 부정기 기간동안 위탁시키는 조치이다. 한국과 비교하자면, 보호처분 제6호(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제7호(병원 및 요양소 위탁)와 유사하다(Di Nuovo & Grasso, 1999).

벨기에에서 1965년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처벌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소년판사는 다만 “교육 조치”만을 부과할 뿐이지만, 실제로 벨기에의 각종 교육조치나 개입은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처벌”, “형벌”과 매우 흡사하다(Van Dijk et al., 2006:204).

소년법원의 첫 단계인 예비조치의 목표는 범죄행위 자체와 청소년의 성격 및 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다. 판사는 법원에 소속된 사회서비스국에 사회조사를 명하고 정신과의사가 의학-심리학적 검사를 하도록 한다. 예비조치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소년판사가 부과할 수 있는 예비조치는 보호관찰과 시설배치가 주축을 이룬다. 보호관찰은 단순 보호관찰과 조건부 보호관찰로 구분되는데, 조건부에는 학교 또는 가이던스센터에 출석, 사회봉사, 교육훈련, 중재 등의 조건을 병과하여 보호관찰에 부과하는 것이다(Van Dijk et al., 2006:205).

6) *Misure di sicurezza*

두 번째 단계로 최종 조치는 본 재판에 의해 부과된다. 검사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어떤 조치를 주장하고 피고측 변호인은 이를 변호하고 부모는 동석할 수 있다. 사법적 결정으로써 소년판사는 사건을 기각하거나 이전단계에서 부과했던 예비조치를 재부과하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소년판사가 부과할 수 있는 결정은 예비조치들-보호관찰, 민간·지방정부·연방 시설 수용- 외에 견책과 성인법정으로의 이송이 추가된다. 성인법정 이송 결정만이 소년법원에서 내리는 진짜 처벌로 본다 (Van Dijk et al., 2006:206).

3. 3국의 공공-민간 협력시스템 비교

벨기에의 프렌치지방정부는 1991년 법령⁷⁾개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권익에 대한 존중, 예방의 중요성, 가족과의 연합이라는 해결책에 우선권을 두고, 공적개입을 대체하는 다양한 사회 및 교육 분야에서 전문적 지원의 실행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프렌치 지방정부가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행하는 특별지원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의 독특한 협력형태로 이루어진다. 청소년지원 업무에서 공공영역은 필요한 부분에만 개입한다.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업무의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할 때, 또한 요구되는 조치가 개인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내포하고 있을 때에는 공공영역에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다. 공공영역이란 청소년지원국(SAJ) 및 청소년보호국(SPJ) 또는 지방정부 소년보호시설처럼 법률로 보장하는 개입을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외에는 대부분의 청소년지원업무는 비영리에 기초한 민간협력기관에 위탁된다. 다양한 민간 협력기관에의 위탁이 청소년지원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1) 공공-민간 협력을 이끄는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이태리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비행청소년 사회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88년에 법무성장관령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무성산하 지방사무소인 소년사법센터(CGM)⁸⁾가 중심이 되어, 관내 청소년공공시설(소년구치소, 소년

7) *Décret de 4 mars 1991 relatif à l'aide à la jeunesse*

8) *Centro Giudizio Minorile(CGM)*은 지역별로 1개소씩 전국에 14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

교도소, 소년복지사무소등) 및 민간기관(가정공동체-콤포니타, 위탁가정, 데이센터 등)에서 필요한 재정 및 인력 자원확보를 위하여 시민, 민간기관, 기업체 등에 대하여 특정한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개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청소년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재정에 의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소년사법센터는 지방정부와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홍보한다(Comune di Roma, 2004).

벨기에에는 다양한 개혁정책들로 인해 연방정부는 광범위한 교육, 문화 정책들을 플레미쉬 및 프렌치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지방정부에 위임하였다. 비행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연방정부는 재정지원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나 민간단체들은 위협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MFC, 2006).

한국의 경우는 개정소년법에서 법무부장관은 “비행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적 책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비행청소년의 선도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및 노동부를 들 수 있고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는 법무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무수하게 찾아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법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교육청)와의 협력의무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동 조항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만을 지니고 있으므로, 시행령 등을 제정하여 동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재판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소년사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해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넓은 관점에서 그 목적을 청소년의 복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중심 또는 아동최상의 이익 원칙에 따른 소년사법의 실현은 곧 청소년 자신의 요구와 생각을 정확히 조사하고 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심판과 처우에 반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진정한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개정소년법에 새로이 포함된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와 범원 단계에서 시행하는 ‘전문가의 진단’ 및 ‘국선보조인제도’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확대

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12조에서는 소년부 판사가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면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등 분야별 전문가의 다학문적 팀-접근이 필요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민간 전문가의 진단을 위한 사업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법무부 산하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소의 심사·조사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도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소의 심사진단 단계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년법 제 49조의2에서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청소년의 품행이나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조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하지만, 향후 소년법개정을 통하여 검사의 조사업무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해야 하며, 조사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들과 더불어 제 12조에서 명시한 정신과의사 등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다학문적 진단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태리에는 청소년에 관한 재판과정에 민간인이 판사로 참여하는 명예법관제도가 매우 중요한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Dosi, 2005). 이태리의 소년사건 처리절차는 1988년 소년법(d.p.r. 448/1988)에 따라 예비조사, 예비심리, 재판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예비조사는 예비심리에 필요한 수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서 소년법원에 소속된 전문판사가 수행한다(GIP).

예비심리 단계와 재판에는 전문법관이 아닌 민간인이 명예판사로 참여하여 결정에 참여한다. 예비심리는 예비조사가 끝난 후 개시되며 한 명의 전문판사와 두명의 남녀 명예판사로 구성된다(GUP). 예비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청취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본 재판은 소년법원에서 개시되며 소년법원에 소속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처리한다. 소년법원 재판부는 법률가인 전문판사⁹⁾ 2명과 아동 및 청소년분야 전문가 중에서 임명되는 명예판사¹⁰⁾ 2명으로 구성된다. 명예판사는 남녀 각 1명씩이다. 판결은 4인

9) *Giudice togati*

10) *Giudice onorari*

재판부의 표결에 의하며 명예판사도 전문판사와 동등한 결정권을 갖는다(Dosi, 2005).

3) 보호관찰활동에의 민간 참여

한국은 종전까지 전적으로 법무부 공무원 위주로만 시행해 오던 비행청소년선도체계를 2008년 개정소년법에 따라 대폭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중이다.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서 제4호(단기보호관찰) 또는 제5호(장기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제32조의2 제1항).

보호관찰제도가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공공조직으로서 보호관찰소와 담당 공무원의 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소가 지역사회의 민간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이들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자발적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보호관찰제도의 효과성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5; 김일수, 2009).

그러나 법무부 등 정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간과의 협력형태와 내용은 개선될 여지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보호관찰에 있어서 보호관찰소와 민간 영역간의 협력관계는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창의성, 융통성, 신속성, 경제성 등 민간부문의 장점을 살려, 관료성, 경직성, 둔감성, 비경쟁성 등 공공부문의 단점을 보완하고, 무엇보다도 법무부가 채용의 안정성, 통합성, 조정 등을 통하여 각종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 위원들이 갖는 채용의 불안정성, 단편성, 일시성 등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진정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의미한다(권문일·정익중, 2005).

한국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방식, 즉 지역사회의 민간 전문가나 기관들을 보호관찰 사업의 운영에 참여시키면서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해 보호관찰소가 자체 재정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비용을 민간 참여기관에 부담시키는 방식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면, 민간전문인력과 기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권문일·정익중, 2005).

이태리에서는 개개의 청소년에 대하여 개별화된 사회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Hazel, 2008:56). 1988년 소년법 제6조에 의하면 사법절차 하에 있는 모든 청소년에 대하여 복지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비행청소년선도를 위한 복지 지원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방행정당국은 법무성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태리에서는 지역사회내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과 청소년 개개인을 연계시키는 핵심 조직은 청소년복지사무소(USSM)¹¹⁾이다. 청소년복지사무소는 지역소년사법센터에 소속된 법무성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소와 소년분류심사원을 합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주된 업무는 법원이 위탁한 청소년의 성격 및 환경조사 명령을 수행하고, 범죄로 인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사회내 처우를 받고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의 심리상담 및 실제적 복지 지원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의 조치명령을 지역사회내에서 감독하는 기능을 한다.

비행청소년 또는 위협에 처한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내 숙박형 시설로서 가정공동체-콤포니타(Comunita')가 있다. 콤포니타는 정부인가를 받아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법무성에서 직접 운영하는 콤포니타는 전국에 13개소가 있다(Don Gelmini, 1992).

벨기에에서 청소년보호에의 민간 및 다기관 참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1991년 프랜치 지방법령에 의해 시작된 “개방환경에서의 지원서비스(AMO)”이다. AMO는 소년법원 소속 청소년지원국(SAJ)이 청소년과 처음 접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 인식시키고, 적절한 지원내용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학교는 청소년이 20일 이상 결석할 경우에 학교장은 모든 사안을 청소년지원국에 통보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심리의료사회센터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청소년지도사¹²⁾를 중등학교에 배치하여 교내폭력 및 따돌림 등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MCF, 2000; MFC, 2006).

4) 선도절차에 가족의 참여

자녀의 행위에 대해 부모의 책무성을 부과하는 제도들이 최근 수년간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은 2008년 개정 소년법에서 최초로 문제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11) *Ufficio di Servizio Sociale per Minorenni(USSM)*은 전국적으로 2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12) *Médiateur scolaires*

인정하여 부모교육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도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이명숙, 2008a).

벨기에는 1990년 플레미쉬지방정부 법령개정 및 1991년 프랜치지방정부 법령개정을 통하여 특별히 청소년과 가족의 공조를 강조한다. 가족유대가 강화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지원들을 통하여 비행청소년을 사법적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전략을 취한다. 청소년을 위한 공공 또는 민간의 서비스에는 언제나 청소년의 출신가정을 중심에 두고 가족관계에 대한 존중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된다. 가족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을 외부시설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경우에, 심지어 청소년을 강제격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과의 연계는 유지되어야 한다(Van Dijk et al., 2006; MCF, 2000; MFC, 2006).

벨기에 플레미쉬 지방정부의 가족중심 청소년보호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가족의 책임과 사회적 지원망 참여를 강화한다. 둘째, 청소년의 자기신뢰감과 사회적 기술을 강화한다. 셋째, 초기에 문제를 진단하고 예방적 가족지원을 한다. 넷째, 심층적인 위기감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끝으로, 민간보조금 지급 원칙으로는 효과가 동일하다면 최소한의 충격적인 조치를 선택하고, 청소년의 시설수용은 예외적인 조치여야 하고, 가족대체(substituting families) 보다는 가족지원(supporting families)을 우선해야 한다(Van Dijk et al., 2006; MFC, 2006).

이외에도, 2002년에 프랑스도 부모에 대한 처벌 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본에서도 판사가 자녀의 행위로 인해 부모에게 경고를 보내고 부모교육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처벌로서 강제적인 부모교육 명령을 부과하는 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Hazel, 2008:56).

V. 결론 및 정책 제언

비행청소년보호를 논함에 있어서 항상 뒤따르는 상반된 이슈는 ‘청소년범죄자’에게 특별한 보호와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저야하는 ‘범죄자’임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이 곧 복지모델 대 사법모델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상반된 관점을 절충하는 제3의 대안으로 회복적 사법이 소년사법에 있어서 강력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중재와 배상을 도입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책임, 공공의 비난, 사회복지, 교육처분, 수퍼비전과 사회통제, 그리고 지역사회내 처우 등 다양한 제도 도입도 증가하고 있다. 책임과 동시에 권리의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보다 강화된 사법절차상의 청소년 인권보장과 적법절차가 강조되고 있다(Hazel, 2008:67; Scardaccione et al., 1998).

이상에서 고찰한 한국, 이태리, 벨기에 3국의 소년보호제도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보호권 신장을 위해 각 단계에서 소년사법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소년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소년의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사실의 확인과 아울러 그 원인과 배경을 해명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원조하는 케이스워커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즉, 사회방위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교육적·복지적 관점에서 소년사법이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경찰전문화교육을 신설하여 그 과정을 이수한 자를 소년경찰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원단계에서도 심층적인 조사기능이 보강되기 위하여 법원소년부에 청소년전담 조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다학문적인 접근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청소년전문성 제고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분야는 보호관찰영역이다. 개정소년법에 의해 보호관찰의 실시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보호관찰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보호관찰인력규모는 증가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증가에 따라 오히려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관찰관의 양적 부족 뿐만 아니라 청소년전문 보호관찰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 선도업무가 매월 정기 면담에서 생활상태 확인하는 정도이고 실질적인 원호 및 구조활동은 매우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원혜옥, 2009). 따라서 향후 소년법 개정시에는 청소년 보호관찰업무 담당자에 대하여는 성인과 구별되는 임용 절차 및 전문 연수과정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방어능력이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자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중인 청소년에게만 제한적으로 도입한 국선보조인 제도를 경찰수사의 용의자 단계에서부터 소년법원의 처분결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사법처

리단계에 있는 모든 청소년'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제도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국선보조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대다수의 비행청소년들이 저소득계층 및 결손가정에 속해 있어 사실상 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하므로 청소년보호기관 및 단체가 중심이 되어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으로 청소년법률지원 멘토를 양성하여 법정보조인으로 활동케 하는 정책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사 사례로 이태리에서는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법무부산하 청소년복지사무소가 법정에서 청소년의 환경과 입장을 대변하는 보조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또는 복지사무소가 협약으로써 민간 사회단체에 보조인 서비스기능을 위탁하고 있다.

셋째, 발달권 신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 확산이 요구된다. 각각의 청소년의 성향, 능력, 환경 등에 맞는 맞춤형 개별 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공공-민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민간참여기관과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법무부가 비행청소년의 교정보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 및 시설 등과 위탁계약 또는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등의 공식적 방식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하고 민간부분은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형사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이태리와 벨기에에서는 민간기관과의 협약 및 계약을 통하여 각종 전문서비스가 청소년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수행 방식이다. 벨기에는 소요비용 전액을 정부가 제공하는 데 비해, 이태리에서는 청소년에게 투입되는 직접 사업비만 지원하고 인건비 등은 민간기관이 자체 조달하는 형식을 주로 취한다.

넷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사업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예컨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다기관 연계 협력을 담당하는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칭)”를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고, 청소년과 다양한 공공·민간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 또는 자원봉사 멘토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시키는 코디네이터 또는 사례관리전문가를 배치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남미애, 2009; 조은경 외, 2006). 외국 사례로서 이태리에서는 법무부의 지역사무소로서 소년사법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산하 공공기관으로 청소년복지사무소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벨기에에서는 지방정부에 소속된 청소년보호상임위원이 소년법원에 파견되어 청소년의 생활환경 조정 및 선도교육을 연계하고 인권보호 상황을 모니터한다.

결론으로서, 비행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를 위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 또는 민간의 구분을 떠나서 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가정, 학교, 청소년 관련기관, 시민단체, 종교단체, 사회복지기관, 자치단체, 경찰·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청소년 문제는 사회전반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총체적인 문제이므로 공공과 민간의 구분을 넘어서서 유관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현아(2006). 청소년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권문일·정익중(2005). 보호관찰사업에 있어서 민관협력모델의 적용과 과제. 보호관찰, 제5호, pp. 1-22.
- 김일수(2009). “한국 보호관찰 20년의 성과와 과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세계속의 보호관찰 그 성과와 과제.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보호관찰학회.
- 남미애(2004). 소년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교정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3호, pp. 151-180.
- 대한민국법령집(2005). 소년법 등.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아동·청소년백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5). 사례연구집-청소년보호관찰 지원사업. 사업보고서.
- 오영근·최석윤(1994). 독일 형사사법에서 민간인 참여. 법무부(편), 각국의 자원봉사제도 연구, pp. 29-68.
- 원혜욱(2009). “소년 보호관찰의 성과와 과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세계속의 보호관찰 그 성과와 과제.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보호관찰학회.
- 이동원(1994). 미국의 범법자 선도보호 분야에서의 민간봉사자 참여제도. 법무부(편), 각국의 자원봉사제도 연구, pp. 69-96.
- 이명숙(2008a).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다기관협력체계 구축방안. 범죄예방정책연구, 통권 20호, pp. 91-123.
- 이명숙(2008b).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심리적·환경적 요인의 탐색.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심포지움 “긍정의 힘과 인간발달” 발표자료집, pp. 33-53.
- 이민수·이장규(2009). 상담조사 및 기소결정전 조사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 도입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논집, 제9권, pp. 555-630.
- 조은경·최소영·박정오(2006). 비행청소년 멘토링효과와 슈퍼비전 사례연구. 보호관찰, 제6호, pp. 2-42.
- 천정웅(2008).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아

- 동권리학회(편), “아동청소년 참여권 : 한-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의식과 실태” 학술대회자료집, pp. 13-47.
- 청소년보호위원회(1998).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 연구보고서.
- 최옥채(2002). 보호·교정기관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구축 방안. *교정연구*, 제17호, pp. 243-269.
- Alder, C. & Wundersitz, J. (1994). 'New directions in juvenile justice reform in Australia', in Alder, C. & Wundersitz, J. *Family Conferencing and Juvenile Justice: The Way Forward or Misplaced Optimism?* Canberra: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Cartuyvels, Y.(2002). *Justice des mineurs et sanctions alternatives*. Liege: Editions Jeunesse et droit.
- Cavadino, M. & Dignan, J.(2006). *Penal systems: A comparative approach*., London: Sage.
- Centro per la Giustizia Minorile-CGM(1999). *Programma per lo sviluppo dei sistemi di minori penali*.
- Commission d'Evaluation(2004). Rapport de la Commission d'Evaluation Centre “De Grubbe” a Everberg. *Journal de Droit Jeune*, Vol. 239.
- Comune di Roma(2004). *Piano per il Carcere 2004-2006*. Unpublished report.
- Di Nuovo, S. & Grasso, G.(1999). *Diritto e procedura penale minorile*. Milano: Giuffre editore.
- Dipartimento per Giustizia Minorile-DGM(2006a). *Modello organizzativo, operativo, funzionale e strutturale dei Centri Prima Accoglienza*. Unpublished report.
- Dipartimento per Giustizia Minorile-DGM(2006b). *Direzione generale per l'attuazione dei provvedimenti giudiziari*. Unpublished report.
- Dipartimento per Giustizia Minorile-DGM(2006c). *Progammazione Anno 2007*. Unpublished report.
- Don Gelmini, P.(1992). *Proposta di Vita: La Comunità Incontro*. Cinsello Balsamo: Eizione Paoline.
- Dosi, G.(2005). *L'avvocato del minore nel procedimenti civili e penali*. Torino: G. Giappichelli Editore.

- Hallett, C. & Hazel, N. (1998). *The Evaluation of Children's Hearing in Scotland, Vol. 2: the International Context*. Edinburgh: The Stationery Office.
- Hazel, N.(2008). *Cross-national comparison of youth justice*. London: Youth Justice Board.
- Ingrasci, M.(2005). *Il minore e il suo processo: D.P.R. n. 448/1988*. Torino: G. Giappichelli Editore.
- McNeish, D. (1999). Promoting participat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Some key questions for health 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Vol. 13 No. 2*, pp. 191-203.
- Ministere de la Communaute Francaise-MCF(1999a). *Direction generale de rapport d'activites*. Unpublished report.
- Ministere de la Communaute Francaise-MCF(1999b). *Loi du 8 avril 1965-Loi relative a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Unpublished report.
- Ministere de la Communaute Francaise-MCF(2000). *Profil de foncton des delegues et delegues en chef das les SAJ et SPJ*. Unpublished report.
- Ministere de la Communaute Francaise-MCF(2002). *Institutions Publiques de Protection de la Jeunesse-IPPJ*. Unpublished report.
- Ministere de la Communaute Francaise-MCF(2004). *Questions de Principes: Le SAJ de Bruxelles*.
- Ministry of the Flemish Community-MFC(2006). *Special Youth Assistance in Flanders*. Unpublished report.
- Nelken, D.(2006). Italy: A lesson in Tolerance? in Muncie, J. & Goldson, B.(eds.) *Comparative Youth Justice*. London: Sage.
- Scardaccione, G. et al.(1998). *La mediazione penale*. Milano: Giuffre editore.
- UNICEF Italiana(2005). *Uscire dall'invisibilita: Bambini e adolescenti di origine straniera in Italia*.
- United Nations(1998). *Use and Application of United Nations Standards and Norms i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CN.15/1998/Add.1. Geneva: UN.
- Van Dijk, C. et al.(2006). *Survival of the protection model? Competing goals in*

Belgian juvenile justice.

www.giustizia.it (이태리 법무부 홈페이지)

www.just.fgov.be (벨기에 법무부 홈페이지)

www.juridat.be (벨기에 법무부통계국 홈페이지)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Public-Private Sectors Working with Juvenile Delinquents : A Comparison of Korea, Italy, and Belgium

Lee, Myung-Sook*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propose a model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for juvenile delinquents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key elements of the European protection models and the Korean approach to facilitating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y resources.

In terms of methodology, a literature review and a field survey were used in all three countries examined, namely Korea, Italy, and Belgium. In Italy and Belgium, fifteen public institutions and three private juvenile centers are included in the field survey data.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the relevant international laws are reviewed and we found four basic principles of rights pertaining to juvenile delinquents, such as protectionism, due-process, incarceration as a last resort, and optimal intervention. Furthermore, by means of the field survey, particular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juveniles in difficulty are reviewed in Italy and Belgium.

By way of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the resources of the whole community should be mobilized to caring for juveniles in difficulty as a duty not a choice. Furthermore, proposals for new policies and institutional reform are presented.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ts, human-rights protection, protectionism, due-process, least-incarceration/incarceration as a last resort, optimal intervention, community participation, public-private cooperation, field survey, Korea, Italy, Belgium

투고일 : 9월 14일, 심사일 : 10월 16일, 심사완료일 : 11월 16일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yonggi University